

『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안 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경관계획의 수립, 경관사업의 시행, 경관협정의 체결,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「경관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·공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디자인의 진흥과 수준향상을 도모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주민이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3조)
- 경관계획 수립 시 포함될 내용과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)
- 경관사업 대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관사업 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8조)
-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경관협정의 내용, 경관협정서의 작성 및 경관협정운영위원회의 설립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)

-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심의와 자문에 응하기 위해 도시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8조)
- 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9조)
-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와 자문대상에 관한 사항(안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)
- 도시디자인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3조부터 제24조까지)

4. 참고사항

- 「경관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 조례안은

- 「경관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디자인의 진흥과 수준향상 도모 및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 임

○ 주요 내용은

- 주민이 경관계획을 수립 제안하는 경우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3조)
- 경관사업 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6조)
- 경관사업 추진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8조)
-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경관협정의 내용, 경관협정서의 작성과 경관협정운영위원회의 설립신고 등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)

-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심의와 자문을 위한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8조)
- 「경관법 시행령」 제15조와 제16조에 의거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6조)
-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와 자문대상에 관한 규정(안 제20조부터 안 제21조까지)
- 도시디자인위원회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23조부터 제24조)

○ 검토 결과

- 「경관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으로 도시디자인의 수준 향상을 기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·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
- 다만, 안 제21조제2항의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자문대상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다른 위원회의 디자인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에 있어서 “다른 위원회”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